



## 의료법 주요 위반사례

| 의료법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반 사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벌 칙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     | 면허 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       | 진료 방해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17조 진단서 등                 | 허위진단서,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           |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 누출·변조·훼손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             |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|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23조 전자의무기록                |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 누출·변조·훼손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       | 무면허의료행위(반영구화장, 부항 등)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행위 |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33조 개설 등                  |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       |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료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없이 의료기관 개설         |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         | 특수의료장비(MRI, CT 등) '적합'판정없이 사용    |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40조 폐업·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|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무단 폐기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56조 의료광의 금지 등             | 불법의료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           | 업무 정지기간 중 의료기관 개설·운영             |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|



## 약사법 주요 위반사례

| 약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반 사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벌 칙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(면허증 교부와 등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사 면허증 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23조(의약품 조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사(한약사)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<br>한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한 경우<br>(* 「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조제 행위 제외)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4조(의무 및 준수 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제를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26조(처방의 변경·수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의약품 변경·수정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27조(대체조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약품 대체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28조(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제한 약제의 용기·포장에 환자의 이름·용법 및 용량 등을 적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만원이하 벌금             |
| 제29조(처방전의 보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만원이하 벌금             |
| 제30조(조제기록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만원이하 벌금             |
| 제44조(의약품 판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47조(의약품등의 판매 질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질·변패·오염·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·진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·진열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정질병의 전문약국이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상품·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·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 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성인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하는 경우 (의약품업 예외지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방전 없이 항정신성의약품, 한외마약,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고시한 품목 및 오·남용우려의약품 판매하는 경우(의약품업 예외지역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규격품 한약 판매 및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가능함을 암시 표시·광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8조(개봉 판매 금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약품 개봉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50조(의약품 판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제61조(판매등의 금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·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